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255호 2017. 3. 31(금)

차 례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913호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479호 2016년도 재난관리 실태공고 ----- 11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 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강 범 석

2017년 3월 31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913호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 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 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 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 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중전토지”를 “중전 토지”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이전에 토지 이동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규 등록,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는 그 지적 공부상의 면적

제2조제2호 중 “인정 하여”를 “인정하여”로, “기타 방법에 의하여”를 “그 밖의 방법에 따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환지설계의 방법)”을 “(환지 설계의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환지설계”를 “환지 설계”로, “이 규칙 제18조”를 “제18조”로, “획지평가지수에 의하여”를 “획지 평가지수에 따라”로, “환지위치”를 “환지 위치”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획지라 함은”을 “획지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존건물”을 “기존 건물”로 한다.

제5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를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 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로, “제11조제2항제1호 규정에 따른 다른자리 환지순”을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다른 자리 환지 순”으로, “범위 안에서 순차적으로 다른자리”를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다른 자리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필지의”를 “한 개의 필지”로, “할당구역”을 “할당 구역”으로, “환지면적이 최소면적”을 “환지면적이 최소 면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필지이상”을 “2필지 이상”으로, “1필지”를 “한 개의 필지”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환지위치의 지정 순위)”를 “(환지 위치의 지정 순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지위치 지정은 제6조 규정에 의한 사항과 면적지정”을 “환지 위치 지정은 제6조에 따른 사항과 면적 지정”으로, “다른자리”를 “다른 자리”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지예정지”를 “환지 예정지”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지예정지”를 “환지 예정지”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도로중심선의”를 “도로 중심선의”로, “도로중심선에서”를 “도로 중심선에서”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등으로 인하여 상기 각호”를 “등에

따라 상기 각 호”로, “다른자리”를 “다른 자리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종전토지 및 환지면적의 최소규모)”를 “(종전 토지 및 환지면적의 최소 규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종전토지중”을 “종전토지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최소규모”를 “최소 규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28조”를 “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제28조”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토지면적의 범위 안”을 “토지 면적의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타 시설물의 토지로서”를 “그 밖의 시설물의 토지로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8조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라”로, “환지 후”를 “환지 후”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환지되는 권리면적이 150제곱미터에 미달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종전의 토지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기존의 건물이 있거나 지가가 높은 토지로서 증환지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법 제3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종전토지의 면적이 일정규모”를 “ 「도시개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종전 토지의 면적이 일정 규모”로, “부족환지”를 “부족 환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전청산”을 “금전 청산”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존시설”을 “기존 시설”로, “종전토지”를 “종전 토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정리후”를 “정리 후”로, “토지면적”을 “토지 면적”으로, “정리후”를 “정리 후”로 한다.

제11조 중 “제3조의 규정”을 “제3조”로 한다.

제12조 중 “둘째자리이하는”을 “둘째자리 이하는”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4조 중 “사업구역안”을 “사업구역”으로, “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수립하기위해 사업구역내”를 “수립하기 위해 사업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지장물은 조사시점”을 “지장물은 조사 시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정리전 토지평가는 당해”를 “정리 전 토지평가는 해당”으로, “사업시행전”을 “사업시행 전”으로, “정리후”를 “정리 후”로 한다.

제17조 중 “유사지역”을 “유사 지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정리전”을 각각 “정리 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정리후”를 “정리 후”로, “지수 및그”를 “지수 및 그”로, “소수점이하는”을 “소수점 이하는”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9조 규정에 의한 공고로서”를 “제9조에 따른 공고로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1조제2항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2조 중 “매각책정 하여야”를 “매각 책정하여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의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을 “따라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2회”를 “두 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매각시”를 “매각 시”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필요에 의하여”를 “필요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로, “출연 하여”를 “출연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기타시설”을 “그 밖의 시설”로, “토지로서”를 “토지로서”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1호 내지 제8호”를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으로, “보아 경쟁”을 “경쟁”으로, “의하는”을 “따르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일반경쟁 입찰”을 “일반경쟁입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공용지의 매입의무자가 매각 통보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 체결 및 매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는 다음 날부터 매입완료일까지 미납부 대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금고(이하 “구금고”라고 한다) 일반대출 금리를 가산(加算)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제4항 중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가 기한내”를 “제3항에 따라 공공용지가 기한 내”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제3호 서식에 공고 하여”를 “별지 제3호서식에 공고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매각예정 토지목록”을 “매각 예정 토지 목록”으로,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입찰은 입찰서(별지 제5호서식)를 공매봉투에 넣어 봉한 후 접수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접수 후 입찰등록자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입찰서를 개

봉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필지별 입찰조서를 작성하고 해당 필지별 토지예정가격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한다.

제27조 중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제27조의 규정”을 “제27조”로, “1월”을 “1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체없이 매수신청자”를 “지체 없이 매수 신청자”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를 무효”를 “무효”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방법 으”를 “방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1개”를 “한 개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 입찰무효”를 “그 밖에 입찰 무효”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반경쟁 입찰”을 “일반경쟁입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낙찰일로”를 “낙찰일”로,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개발특별회계에”를 “도시개발특별회계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매각결정”을 “매각결정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세무 서장”을 “세무서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본문 중 “3월”을 “3개월”로, “6월 이내에 서구금고”를 “6개월 이내에 구금고”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도금 또는 잔금 납부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납부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된 만료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납부기간을 재연기할 수 있다.

제31조제2항 중 “단서규정에 의하여”를 “단서 규정에 따라”로, “미납금에 대한

여 연기한 날부터 서구금고 일반대출 연체 금리”를 “이자를 가산하지 않으나, 재연기 할 경우에는 미납금에 대하여 재연기한 날부터 구금고 일반대출 연체금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6월”을 “6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건축물 기타”를 “건축물 및 그 밖의”로,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납부 하여야”를 “납부하여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별지 제10호 서식의 명의변경승인서를 발급하고 규정에 의한”을 “별지 제10호 서식의 명의변경승인서를 발급하고,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매각토지로서”를 “매각토지로써”로, “완납전”을 “완납 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4조제1항 제2호”를 “제24조제1항제2호”로, “의한”을 “따른”으로, “제1호 내지 제2호”를 “제1호부터 제2호까지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명의 변경”을 “명의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1호 서식”을 “제11호서식”으로, “제12호 서식”을 “제12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완납전이라도”를 “완납 전이라도”로, “토지에 한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토지 또는 매매계약체결 후 구청장이 인정하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인·허가용 토지사용승낙서를 요청한 경우”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제1항 제5호”를 “제1항제5호”로, “기타”를 “그 밖”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계약변경시”를 “계약변경 시”로, “계약시”를 “계약 시”로, “변경시의”를 “변경 시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쌍방”을 “양쪽”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해약등)”을 “(해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잔

여대금”을 “중도금 또는 잔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증감하여”를 “증감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제1호”를 “제1항제1호”로, “구”를 “인천광역시 서구”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소유권이전)”을 “(소유권 이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처분후 소유권이전을 위해 별지 제13호 서식”을 “처분 후 소유권 이전을 위해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유권이전”을 “소유권 이전”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중 “환지처분시”를 “환지처분 시”로, “증감면적”을 “증감 면적”으로, “환지처분시”를 “환지처분 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환지처분 일부터 6월”을 “환지처분일부터 6개월”로, “서구금고”를 “구금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구역안”을 “사업 구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통보 하여야”를 “통보하여야”로 한다.

제37조 중 “별지 제14호 서식”을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제38조 중 “도시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41조 규정에”를 “법 제41조”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6조에 따라”로, “청산할”을 “청산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전청산”을 “사전 청산”으로, “청산시”를 “청산 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전청산”을 “사전 청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사전 청산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전청산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9조제5항 중 “사전청산금”을 “사전 청산금”으로, “청산시”를 “청산 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괄조서(별지 제16호서식)
2. 징수조서(별지 제17호서식)
3. 교부조서(별지 제18호서식)
4. 불환지청산조서(별지 제19호서식)

제42조 본문 중 “청산시”를 “청산 시”로 한다.

제43조 중 “동일사업구역”을 “동일 사업 구역”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청산금징수조서에 의하여 작성하되 납입개시”를 “청산금 징수 조서에 따라 작성하되 납입 개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법 제51조”를 “「지방세법」 제51조”로 한다.

제46조 단서 중 “일정기간 징수유예 하거나”를 “일정 기간 징수유예하거나”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서구금고”를 “구금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공유지”를 “국·공유지”로 한다.

제48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징수결의전”을 “징수결의 전”으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기간 내”를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압류후에는 체납자에게 압류사실”을 “압류 후에는 체납자에게 압류 사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최고장을 받고서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체납처분 할 수 있다.

제50조 본문 중 “당해 물건지의 등기촉탁”을 “해당 물건지의 등기 촉탁”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확보 하거나”를 “확보하거나”로, “등기촉탁을”을 “등기 촉탁을”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송달 불능분”을 “송달이 불가능한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청구서 (별지 제20호서식)

제52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서구금고”를 “구금고”로 한다.

제53조 본문 중 “환지처분후”를 “환지처분 후”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환지처분이전”을 “환지처분 이전”으로, “교부시”를 “교부 시”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7 - 479호

2016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따라, 우리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투자 현황(예방·대비·대응·복구사업 등) 및 운영성과 등을 알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로 재난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6년도 재난관리 실태를 공고 합니다.

2017. 3. 3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재난관리 실태 공시 총괄

- ◆ 전년도에는 재난이 2회 발생하여 피해는 11건의 사유시설 피해로 주택침수 5건, 농경지 침수 2건, 농작물 침수 3건, 과수낙과 1건으로, 복구 11건 16,50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 재난 유형별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가 1회 발생하였으며 피해는 4,598천원이며, 재해복구는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 강풍으로 인한 과수 낙과가 1회 발행하였으며 재난지원금 5,000천원을 피해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예방 실적으로는
 - 재난에 대응할 조직은 1개 실 17명입니다.
 -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는 4종으로 59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 기금 적립은 당해연도 확보기준액은 9,227백만원이며 9,227백만원 확보되어 100% 확보되었습니다.
 - 최근 5년간 평균 5,812백만원 보다 3,415백만원 증가하였고, 지난해 보다 1,332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확보된 재난관리기금을 5년 평균 356백만원 사용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9백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160백만원 적게 사용하였습니다.

- ◆ 「자연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 진단 결과 8등급이며, 지난 진단결과와 비교하여 1등급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 ※ (안전) 1등급/그룹 ‘가’ <-----> 10등급/그룹 ‘마’ (위험)

- ◆ 그 밖에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은 18개 시설 중 2개 시설이 내진 성능 확보 또는 내진보강 완료되어 11%내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 재난관리 실태 세부 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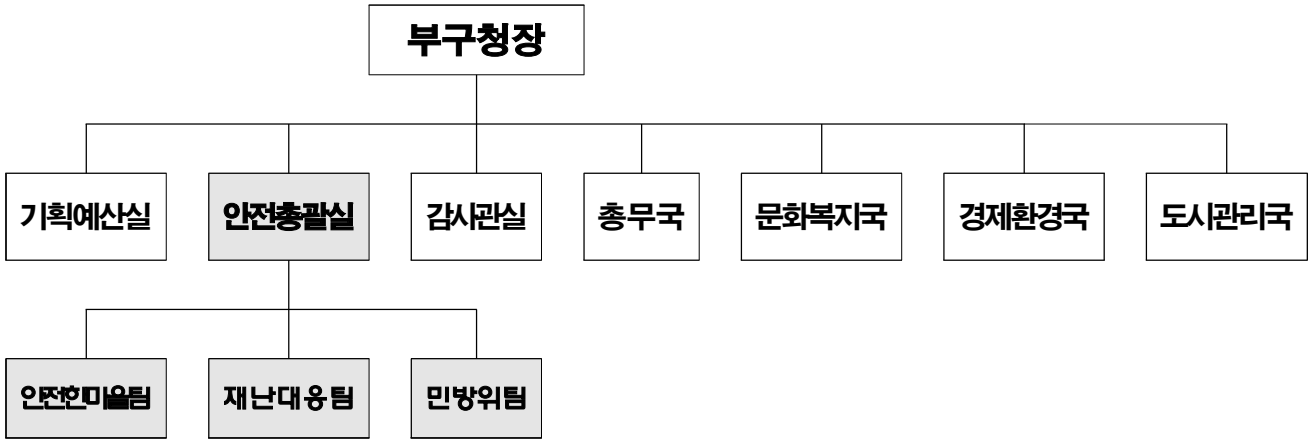
①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일시	재난(피해) 원인	피해내용	복구내용	추진사항
7.1~7.7	호우	-사유시설 : 총10건 · 주택 침수 5건 · 농경지 침수 2건 · 농작물 침수 3건	- 사유시설 : 재난지원금 11,500천원 지급	완료
8.26~9.1	강풍	-사유시설 : 총1건 · 과수 낙과 1건	- 사유시설 : 재난지원금 5,000천원 지급	완료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조치실적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가.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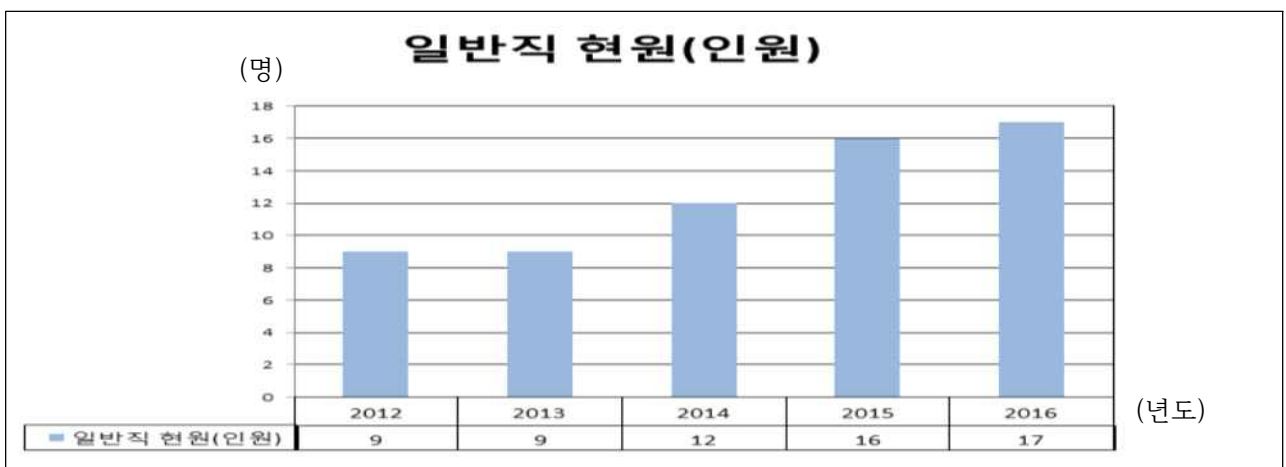


나. 정원

과 별	계	일 반 직								기능직	기타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안전 총괄실	정원	17	17	0	1	6	6	3	1		
	현원	17	17	0	1	6	4	2	4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일반직 현원(인원)	9	9	12	16	17
기능직 현원(인원)	0	0	0	0	0



☞ 일반직 및 기능직 현인원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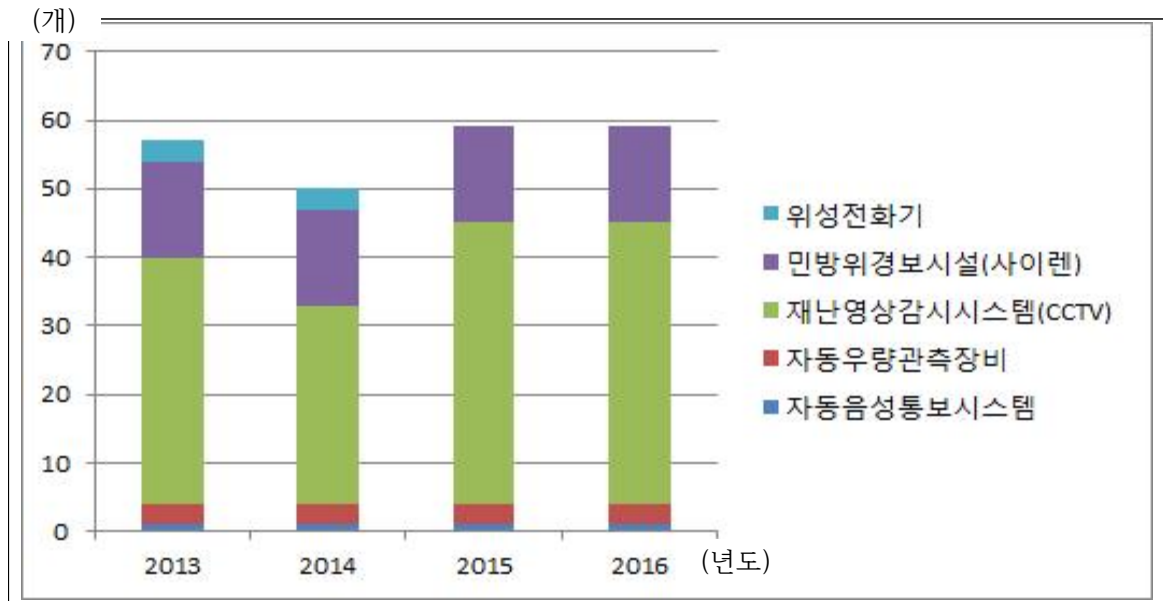
- 각종 안전 및 재난사고에 대비하여 촘촘하고 폭넓은 안전행정 추진 및 총체적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하여 2014. 11. 3. 조직개편에 따라 안전관리과에서 부구청장 직속 안전총괄실로 재편되면서 인력 보강

(2)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구 분	개소	설치장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1	서구청
자동우량경보시설		
우량관측장비	3	서구청, 검단출장소, 가좌4동 주민센터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자동수위경보시스템(수위관측시설)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41	
재해문자전광판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14	서구청 외 13개소
민방위경보시설(무선앰프)		
위성전화기		
라디오 재해경보 방송		
기타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3	2014	2015	2016
자동음성통보시스템	1	1	1	1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우량관측장비	3	3	3	3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자동수위경보시스템(수위관측시설)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36	29	41	41
재해문자전광판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14	14	14	14
민방위경보시설(무선앰프)				
위성전화기	3	3		
라디오 재해경보 방송				
기타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에방에 관한 홍보
가. 방재담당공무원의 전문성(재난안전관련 분야) 교육실시

과정명	교육이수일	교육기관	참석 인원	비고
e-시군구재난관리시스템과정	2016.02.29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	
e-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정	2016.03.15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	
국가안전대진단 시설관리 담당자 직무교육	2016.03.31	국민안전처	1	
e-유도선안전관리과정	2016.04.30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	
재난 대처능력 역량강화 교육	2016.04.20	인재개발원	1	
e-재난관리자원의 운용 및 공동활용과정	2016.04.30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직무교육	2016.05.24	인재개발원	2	
지역자율방재단 재난구호 분야 상반기 교육	2016.06.02	인재개발원	1	
안전 및 재난관리과정	2016.06.03 2016.07.20	인재개발원	5	
재난안전분야 종사자교육	2016.09.27 2016.10.11 2016.10.28	인천광역시	5	
e-지진해일실무과정	2016.10.31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	

나. 지역자율방재단 재난관리 교육·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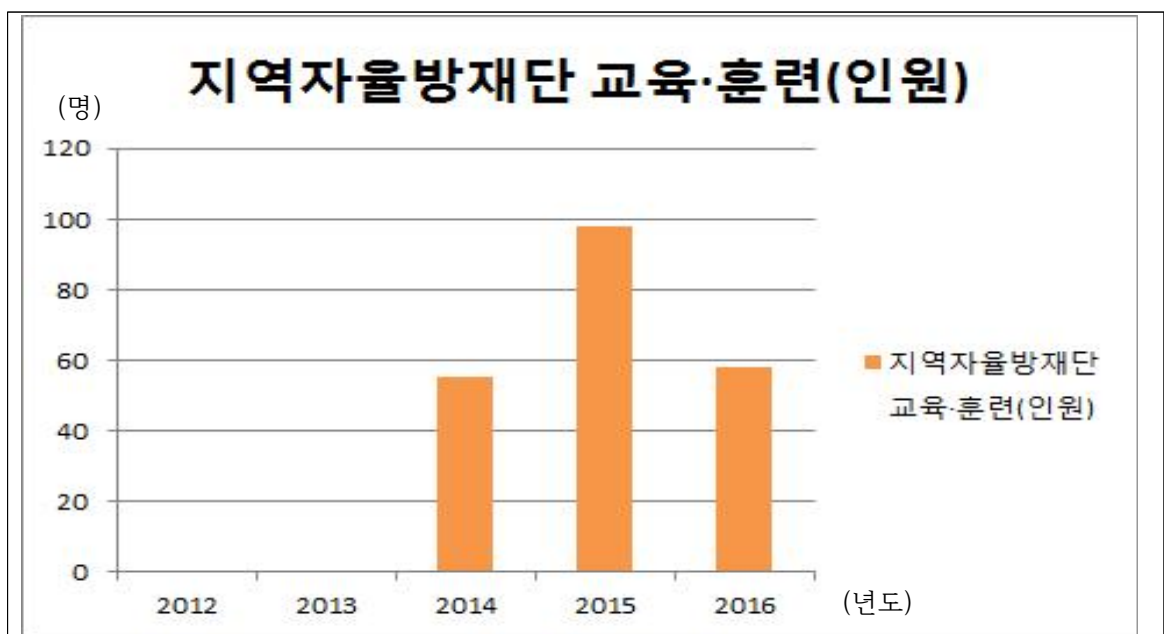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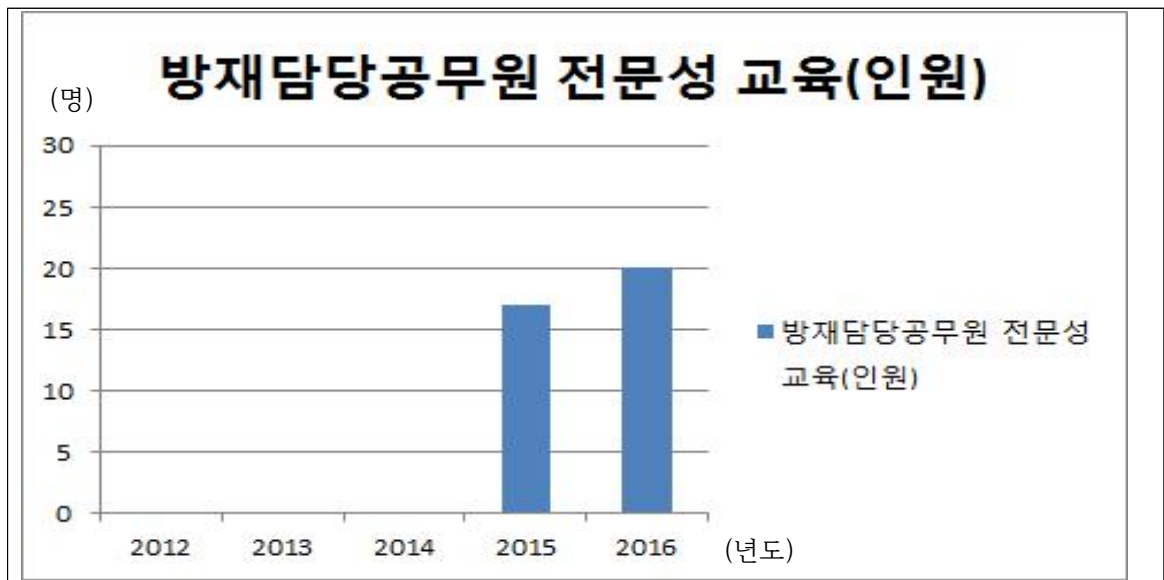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 용	주관	비고
2016.01.25	인천 서구 민방위교육장	25	자율방재단 구성 및 활동강화에 대한 교육	인천 서구 자율방재단	
2016.02.18	정부서울청사	2	국민안전현장관찰단 역량강화 교육	국민안전처	
2016.06.02	인천광역시청	6	재난구호분야 교육	인천시	
2016.07.06	인천 서구 민방위교육장	8	풍수해대비 및 양수기 가동 훈련	인천 서구 안전총괄실	
2016.10.12	울산광역시 대안동	1	울산태풍피해 복구지원 참석	인천시	
2016.11.03	인천광역시청	4	재난구호분야 교육	인천시	
2016.12.02	인천 서구청	12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교육	인천 서구 안전총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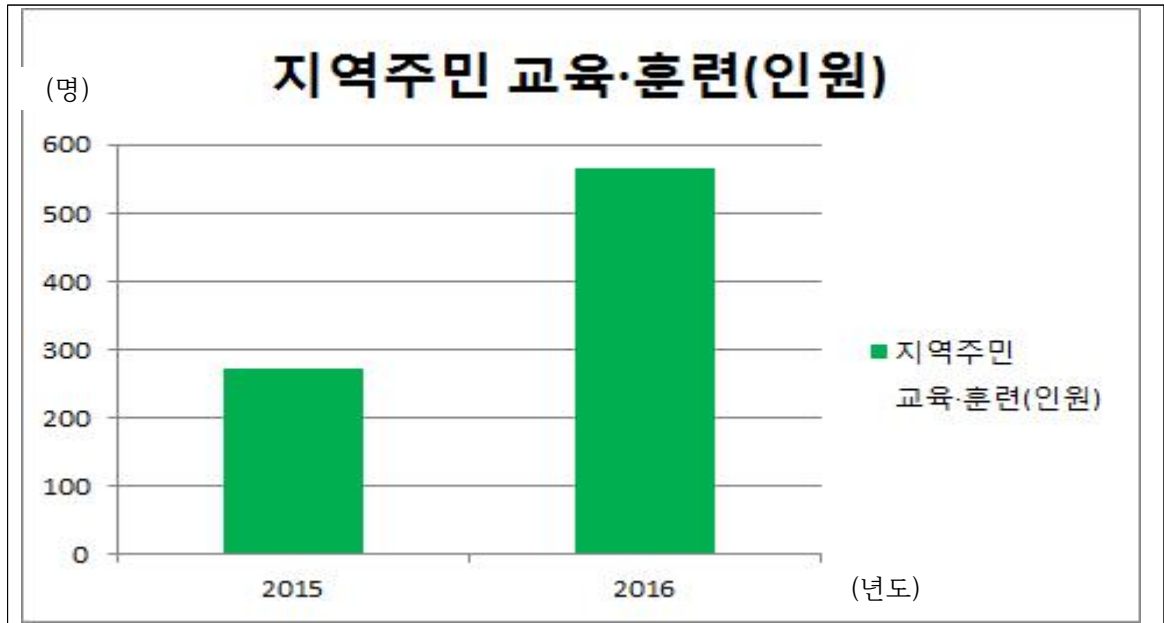
다. 재난관리에방을 위한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훈련

교육/ 훈련명	일시	장소	참석 인원	내 용	주관	비고
건축물 유지 관리 교육	2016.2.2	서구청 대회의실	130명	건축물 유지관리방안 교육	서구청 안전총괄실	교육
소방차 길터 주기 및 화재 진압 훈련	2016.5.16	정서진 중앙시장	30명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상황을 가정 소방차 길터주기 및 화재진압훈련	서구청 안전총괄실	훈련
승강기 이용 자 안전교육	2016.6.29	초은 초등학교	300명	승강기 구조 및 안전요령 이론교육	서구청 안전총괄실	교육
풍수해 대피 및 양수기 가동 훈련	2016.7.6	민방위 교육장	107명	풍수해대비 이론교육 및 양수기 가동훈련	서구청 안전총괄실	교육 훈련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방재담당공무원 전문성 교육(인원)				17	20
지역자율방재단 교육·훈련(인원)			55	98	58
지역주민 교육·훈련(인원)				272	567





☞ 교육·훈련 참석인원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재난구조 및 응급처치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 안전교육은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으며. 관내 공동 주택관리 주체 등에게 건축물 유지관리 등 안전관리요령 교육, 시장상인회 대상으로 소방차 길터주기 및 화재진압 훈련, 초등학교 대상 승강기 안전교육, 재난담당 직원 및 통장 등에게 양수기 가동 훈련을 실시하였음.

라. 안전모니터봉사단 재난안전관리 교육·훈련/ 봉사단원 및 제보실적

◇ 교육·훈련 실적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 용	주관	비 고
2016.02.16	인천 서구청	24	우리마을 안전지킴이 역할 및 활동 방법 교육	인천 서구 안전총괄실	
2016.04.20	인천광역시청	20	재난대처능력 역량강화 교육	인천시	
2016.07.06	인천 서구 민방위교육장	11	풍수해대비 및 양수기 가동 훈련	인천 서구 안전총괄실	
2016.10.17	인천광역시청	5	지진종합대책 토론회	인천시	
2016.10.25	백범김구 기념관	3	전국안전모니터 봉사단 및 지자체 공무원 합동워크숍	국민안전처	
2016.10.31	세종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	1	중앙·지역민관협력 위원회 워크숍	국민안전처	
2016.12.02	인천 서구청	10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교육	인천 서구 안전총괄실	
2016.3월~11월	관내 어린이집	205	어린이놀이시설 환경클린 및 안전수칙교육	안전모니터 봉사단 인천시 서구지회	

◇ 제보·처리 실적

봉사단원(인원수)	제보실적(건)	처리실적(건)			비 고
		완료	진행	불가	
246	528	424	48	56	

마. 재난관리 관련 언론홍보

[현장홍보 실적(안전점검의 날 행사, 캠페인 등)]

연번	행사명	주요내용	행사일시	장소	참석 인원	비고
1	1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에 따른 화재예방 홍보	2016.01.07	거북시장	47	
2	2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2016.02.16	가좌시장	90	
3	3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개학기 학교주변 위해요인 안전대진단	2016.03.08	간재울초	40	
4	4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행락철 유원지 등 놀이시설 안전 예방 홍보	2016.04.04	문자전광판	-	
5	5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행락철 산불 예방	2016.05.11	서곶 근린공원	40	
6	6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생활속 안전문화실천 홍보	2016.06.10	청라1동 일원	30	
7	7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여름철 풍수해 대비 안전위험요소 제거 활동	2016.07.04	서부교육청 맞은편	25	
8	8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물놀이 안전예방 홍보	2016.08.04	사계절 썰매장	32	
9	9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추석명절 맞이 전통시장 전기안전 및 화재예방	2016.09.06	강남시장	45	
10	10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가을철 지역축제 행사장 안전사고 예방	2016.10.07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	28	
11	11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가을철 산불 및 등산객 안전사고 예방	2016.11.04	서곶 근린공원	35	
12	12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겨울철 설해 대비 적사함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	2016.12.05	가정3동 일원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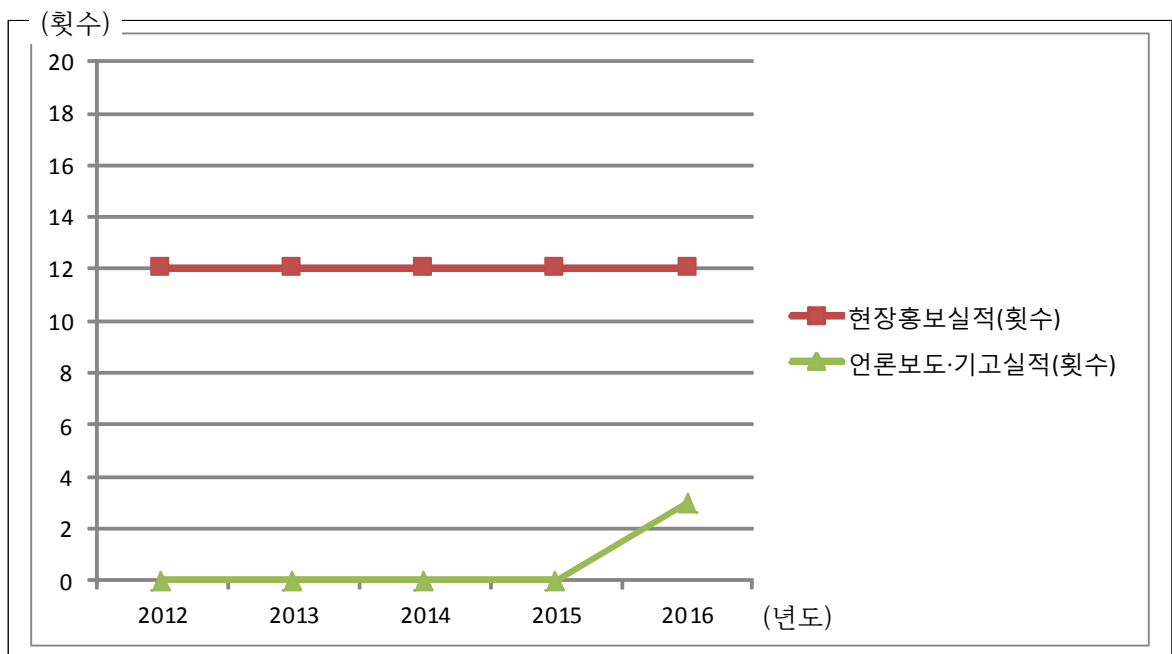
[언론 보도 및 기고실적(신문, 방송 등)]

연번	기사제목	주요내용	보도(기고) 일시	언론사	비고
1	안전한 미래도시 '서구' 만들기 총력	관내 취약시설물(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기능유지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난예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	2016.01.28	현대일보	
2	서구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홍보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2016.02.18	시대일보 외4	
3	서구 부구청장 현장점검 벌여..	여름철 오후대비 재난위험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관리실태 점검	2016.05.27	경기도민일보	

※ 지역신문, 인터넷신문 및 케이블방송 포함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현장홍보실적(횟수)	12	12	12	12	12
언론보도·기고실적(횟수)	0	0	0	0	3



☞ 현장홍보 및 언론보도·기과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매 월 실시하는 현장홍보 실적은 전년과 동일하나, 신문 보도를 통한 언론보도를 적극 실시하였음.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가.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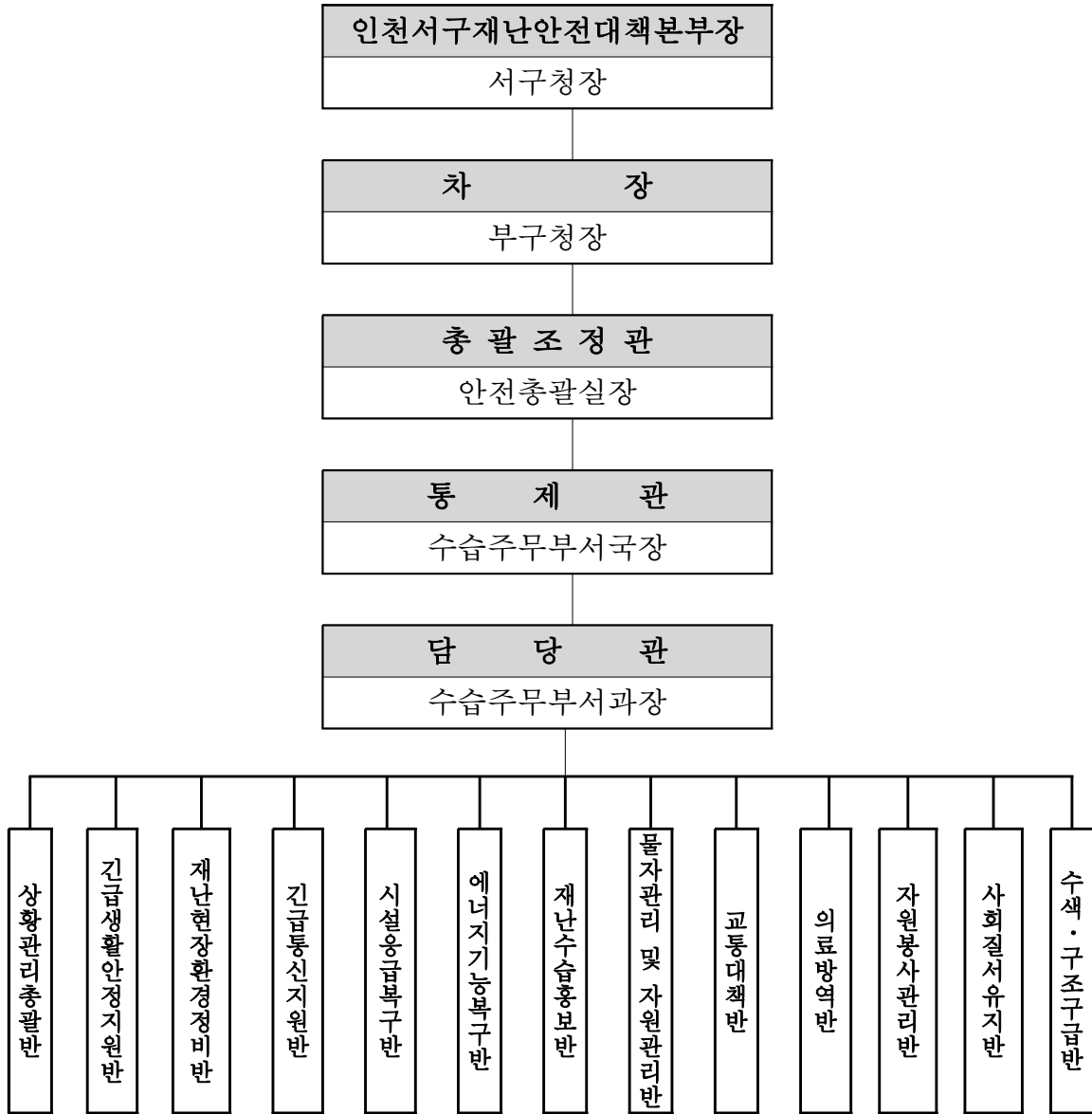
(가) 기본적인 안전관리체계

[안전관리기구의 기능]

구 분	근 거	구 성	기 능
안전관리위원회 (지역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구청장 • 위원 : 18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 법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 구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인천광역시” 제외)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 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 재난 및 각종사고 수습을 위한 관계기 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안전관리실무 위원회	같은 법 제11조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부구청장 • 위원 : 18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위원회 업무보조 • 지역축제안전관리 계획심의 등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	같은 법 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본부장 : 구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재난 안전상황실 설치·운영	같은 법 제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실책임자 : 안전총괄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 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
재난상황의 보고	같은 법 제2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재난상 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내용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안전행정부 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재난 신고	같은 법 제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 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 • 시장·군수·구청장, 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조직



□ 재난관리기능의 임무 및 역할

○ 상황관리 총괄 : 재난총괄담당 업무 수행(안전총괄실)

* 타 기능에 대한 상황관리 총괄 및 상호협력을 위한 지원 사항 등 파악

○ 긴급생활 안정지원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및 이
재민구호 등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희망복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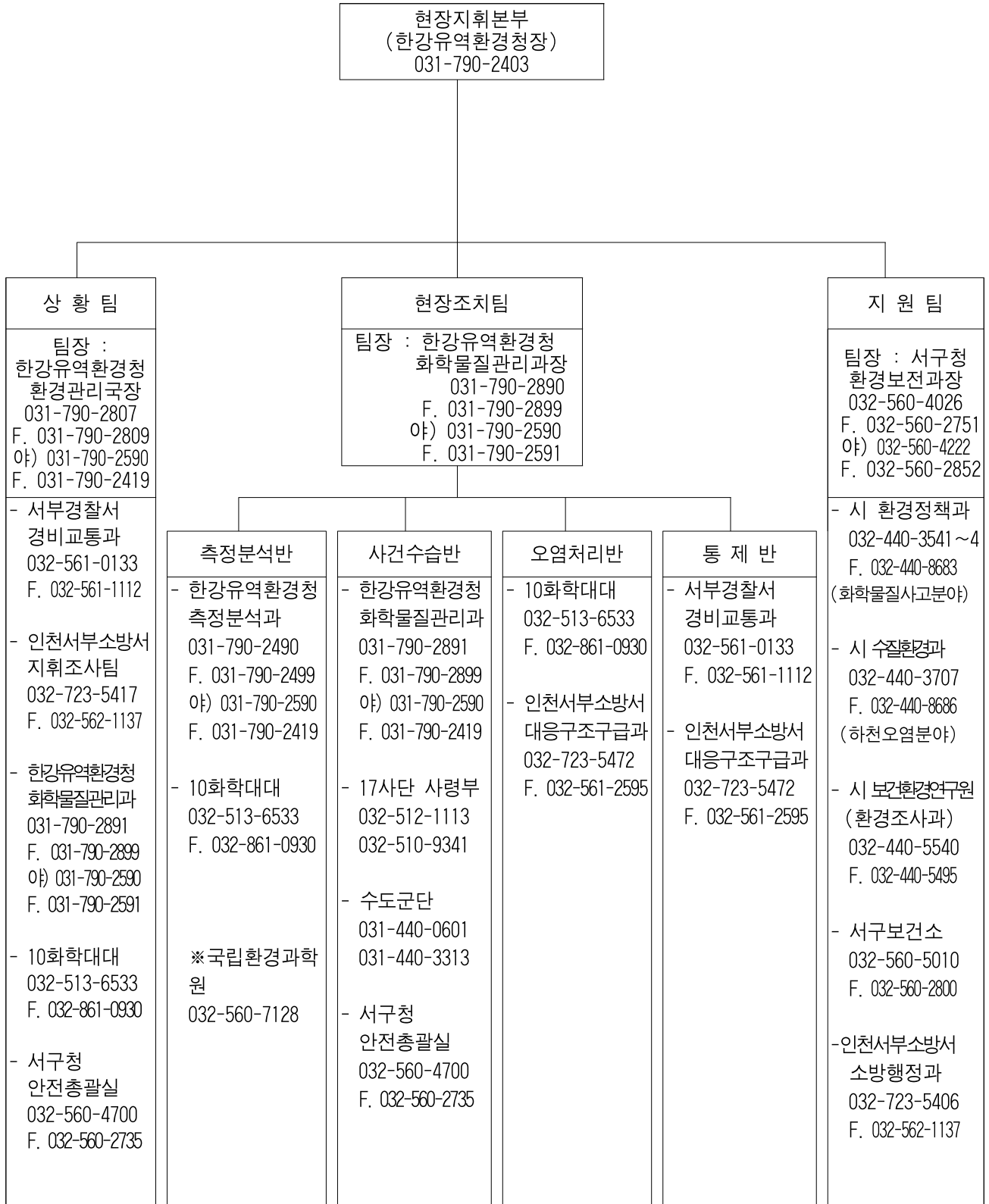
* 인명피해(사망·부상·실종), 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제외

- 재난현장 환경정비 : 유해화학물질, 쓰레기 등 수거·처리 지원(자원순환과)
 - * 환경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환경정비 지원
- 긴급 통신지원 : 통신두절지역 통신시설 인프라 복구(기획예산실)
 - * 통신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통신 지원
- 시설 응급복구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지원(건설과)
 - * 공공·사유시설(환경·통신·에너지·교통시설 제외) 피해현황 및 응급복구 상황 총괄
- 에너지기능복구: 가스전자유류등국민생활밀착형 피해시설기능 회복 지원(경제에너지과)
 - * 에너지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에너지 지원
- 재난수습 홍보 : 재난대처·수습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배포·조정(홍보미디어과)
 - * 타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이슈 등 언론사항 총괄관리 및 지원
-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국가 재난물자계획, 관리, 지원 및 적정상태 유지(안전총괄실)
 - * 타 기능에 대한 물자·자원(장비·자재·시설) 지원 총괄관리
- 교통대책 : 육상(육로, 항공), 해상 교통수단 지원(교통민원과)
 - * 교통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수송 지원
- 의료·방역 : 재난지역 공중보건서비스 지원(보건행정과)
 - * 의료·방역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의료 지원
- 자원봉사 관리 :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희망복지과)
 - * 타 기능에 대한 인력(민·관·군) 지원 총괄관리
- 사회질서 유지 : 재난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서부경찰서)
 - * 교통, 범죄, 현장통제, 안전관리, 주민보호(대피 등) 등 경찰총괄관리
- 수색·구조·구급 : 재난지역 구조·구급 지원(서부소방서)
 - *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및 사망·실종자 수색 등 소방총괄관리

(나) 주요재난별 안전관리체계

[유해화학물질]

○ 현장지휘본부 편성도



○ 유관기관 주요 역할·임무

기관	사전대비	초동조치	중수본·중대본
한강유역 환경청 화학물질 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동체계 및 비상연락망 구축 사고대응장비 단계적 확충 사고 대비 안전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 접수, 상황파악 및 초동대응 사고·주변지역 오염 등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사고현장 대응을 위한 인력 및 장비 등 지원 사고사업장의 조업중단(필요시) 및 사고조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 접수, 상황파악 및 초동대응 사고·주변지역 오염 등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사고현장 대응을 위한 인력 및 장비 등 지원 사고사업장의 조업중단(필요시) 및 사고조사 지원
국민안전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상황점검 비상연락체계 및 핫라인 구축 사고대응 장비, 물자 및 시설 확충 매뉴얼 관리·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침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기상황 모니터링 강화 및 환경부 대응활동 파악·보고 대응대책 및 단계별 조치사항 이행 위기상황 원인 및 진행사항 분석·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부와 경보관련 사전 협의 피해현장 응급복구 등 대민 활동 지원 공무원 비상근무발령 및 복무관리(필요시)
경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연락체계 및 핫라인 구축 경찰력 동원 대응태세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 통제 지원 및 사고현장 출입통제선 설치 사고원인 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구 주민 대피 지원 사고원인 조사 비상출동로, 교통통제로 확보 등 교통관리
소방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연락체계 및 핫라인 구축 사고 대비 대응태세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급구조 및 의료 지원 사고 사업장의 초동대응 조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구 주민 대피 지원 사고현장 대응 조치 지원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단지 내 시설 및 설비등에 대한 안전진단 소관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타부처와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 사업장의 초동대응 조치 지원 위험상황신고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사례분석 및 사후관리시스템 개발 방제정보, 사후복구기술 등 대응정보 제공
기상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시간 상세 기상정보 제공체계 마련 및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지역 및 인근지역 상세 기상정보 제공(필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학사고 현장에서의 상세 기상정보 실시간 제공
기타 유 관·실무기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지역 사업장 현황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적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대응활동 및 수습활동 지원

나.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건명(규정명칭)	주요내용	제정일자	비고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	2005. 4. 1.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2005. 4. 1.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006. 5. 12.	
인천광역시 서구 CCTV 설치·운영 규정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설치·운영하는 CCTV 관리 및 운영에 있어 개인화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준수해야 하는 사항	2010. 6. 25.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2010. 11. 19.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2013. 12. 17.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15. 1. 17.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한마을 만들기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마을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15. 10. 7.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 시설의 관리

시설유형	시설명	비고
전력	인천화력본부	
전력	신인천화력본부	
전력	서인천발전본부	
석유	SK에너지 인천공장	
지하철	코레일공항철도	
매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6) 특정관리대상시설등의 지정·관리 및 정비

가.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관리

[유형별]

총계	시설물			건축물						비고
	소계	도로 시설	기타 (옹벽)	소계	공공업무 시설	공동 주택	중소형 건축물	대형 광고물	건축 공사장	
214	15	14	1	199	7	112	68	1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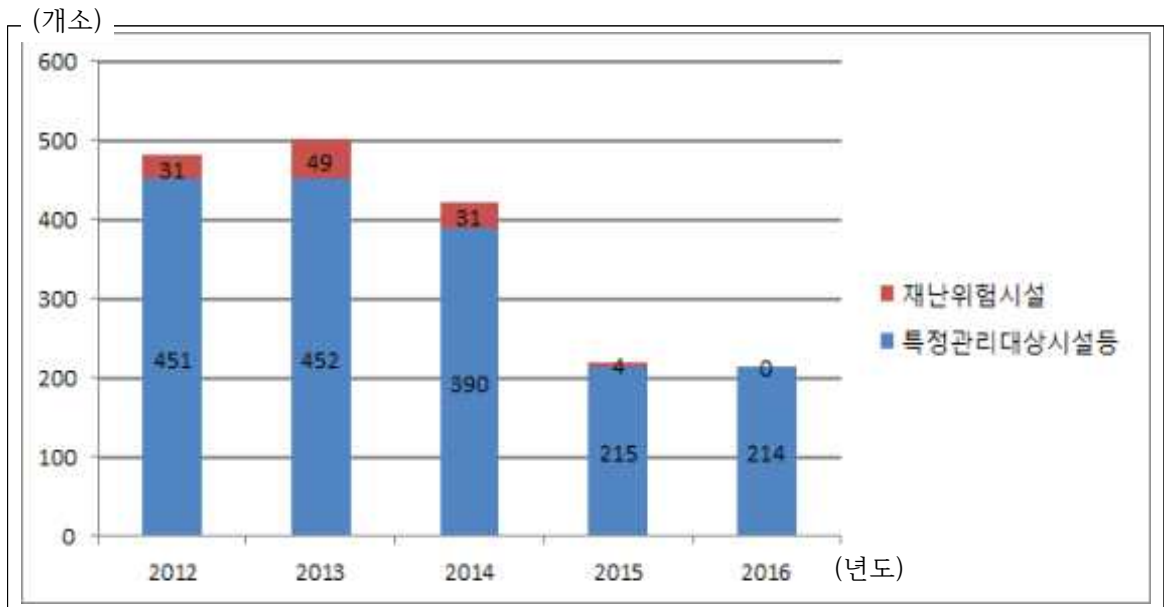
[등급별]

구분	계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			비고
		소계	A등급	B등급	C등급	소계	D등급	E등급	
계	214	214	64	144	6	-	-	-	
시설물	15	15	-	13	2	-	-	-	
건축물	199	199	64	131	4	-	-	-	

- ※ 특정관리대상시설등 : 재난의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
- ※ 중점관리대상시설 : 구조 및 상태 등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그 규모와 이용인구면 등에서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
- ※ 재난위험시설 : 긴급히 보수·보강하여야 하거나, 사용 및 거주 제한을 요할 정도의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 및 지역
- ※ A등급 : 현재는 문제점이 없으나 정기점검이 필요한 시설(이상이 없는 시설)
- ※ B등급 :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시설
- ※ C등급 :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상태로 조속한 보수보강 또는 일부시설 대체 필요한 시설
- ※ D등급 :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로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여부 판단 필요시설
- ※ E등급 :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로 사용금지 또는 개축이 필요한 시설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특정관리대상시설등	451	452	390	215	214
재난위험시설	31	49	31	4	0



☞ 특정관리대상시설등 및 재난위험시설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동진아파트 옹벽(D등급 1개소)는 보강공사 완료에 따라 지정해제함.
- 가좌진주1차아파트(D등급 3개소)는 인천광역시 재난등급 검증을 위한 전문가 현장 점검 결과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자문의견에 따라 등급 조정
- 가좌삼성요양병원 1개소 폐업으로 인한 지정 해제

[재난위험시설 해소대책]

시설 유형	시설명	시설 현황	관리 주체	지정 일자	해소 계획	사업비 (백만원)	조치 사항	해소 완료년도
		해당사항 없음						

- ☞ 해소기간 경과시설물(건축물) 미해소 사유 등 구체적 내용설명
- 해당사항 없음.

나.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정비

[안전점검 실시]

구 분	기 간	대상수량	점검건수	지적건수	점검자	지적사항 조치결과
상반기	01.29~06.10	215	215	17	관련부서	추적관찰
하반기	09.01~11.21	214	214	24	관련부서	추적관찰

[정비실적]

시설 유형	시설명	시설 현황	관리 주체	지정 일자	해소 일자	사업비 (백만원)	정비내용
의료시설	가좌삼성 요양병원		소유자	2009.10.27	2016.03.09		폐업으로 인한 지정해제

- ☞ 안전점검결과 지적사항 미조치 사유 등 구체적 내용설명
- 점검결과 완정교 바닥판 하부 균열 등 지적사항 24개소
- 교량 및 육교 등 공공시설은 단계적 보수·보강 실시
- 민간시설은 소유자에 지속적 유지관리로 지적사항 해소 요구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 재난방지시설의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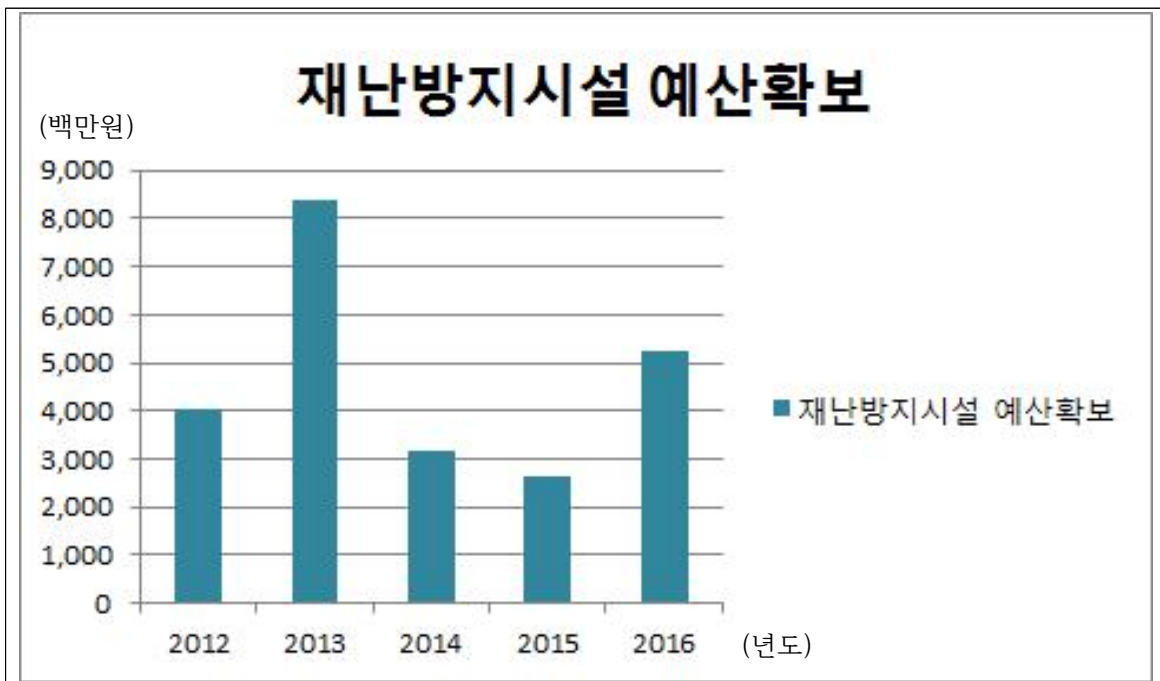
사업명	위치	사업내용(규모)	사업기간	사업비(원)	정비목적
석남동 목재단지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석남동	하수관 정비 3,337m	2016.05.17~08.26	434,270,020	침수예방
백범로 680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백범로	하수관 정비 416m	2016.03.16~06.08	234,344,160	침수예방
청라지구 하수도구조물 정비공사(연간단가계약)	청라지구	관로, 맨홀 정비 등	2016.02.25~12.10	140,767,350	침수예방
청라지구 내 하수관로 비굴착부분보수공사(연간단가)	청라지구	하수관 보수 115개소	2016.04.19~12.10	130,177,890	침수예방
청라지구 내 하수관로 비굴착부분보수공사	청라지구	하수관 보수 185개소	2016.07.07~08.20	170,643,000	침수예방
청라지구내 하수맨홀 정비공사(2016년 연간단가)	청라지구	하수맨홀 정비 283개소	2016.04.06~12.10	149,410,440	침수예방
청라지구 하수도 준설공사(연간단가계약)	청라지구	하수관 준설 360m ³	2016.02.25~12.10	99,964,840	침수예방
청라국제도시 하수관로 준설공사	청라지구	우수관 준설 168m ³	2016.05.23~07.06	71,790,600	침수예방
관내 하수관로 비굴착부분보수공사 연간단가	관내일원	하수관 보수 113개소	2016.04.25~12.10	132,047,800	침수예방
서구 관내 하수맨홀 정비공사(2016년 연간단가)	관내일원	맨홀 보수 161개소	2016.03.29~12.10	86,644,160	침수예방
가정로 57번길 하수시설물(하수관로) 정비공사	관내일원	하수관 정비 110m	2016.06.08~07.02	30,515,480	침수예방
관내일원 하수도구조물 정비공사 연간단가(2차)	관내일원	관로, 맨홀 정비 등	2016.08.16~12.10	68,765,120	침수예방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2016년도 연간단가계약)	관내일원	하수관 준설 550m ³	2016.03.08~12.10	149,592,080	침수예방
검단지역 일원 하수관로 준설공사	검단지역	하수관 준설300m ³ 하수박스 준설 40m ³	2016.04.08~06.06	98,644,700	침수예방
검암2지구 허암길 외 1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검암2지구	U형측구정비 800m	2016.11.07~11.11	3,454,000	침수예방
지방하천(공촌천) 정비공사	공촌천	하상정비 22,680m ² 제방정비 3,150m ²	2016.05.16~06.24	86,367,600	침수예방
심곡천 외 2개소 하천수풀 정비공사	심곡천 등	수풀정비 27,740m ² 하상정비 11,400m ² 등	2016.06.17~07.06	19,825,000	침수예방

사업명	위치	사업내용(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원)	정비목적
지방하천(공촌천) 제방정비공사	공촌천	제방정비 2,000㎡ 경계석재설치 80m	2016. 10. 18~11. 11	15,176,700	침수예방
지방하천(나진포천)수목정비공사	나진포천	수풀정비 38,220㎡ 수목전지 3,822	2016.08.31~10.14	78,926,000	침수예방
공촌천 수생식물(창포)식재공사	공촌천	수풀정비 2,000㎡ 수생식물 2,500㎡	2016. 10. 31~11. 19	37,809,200	침수예방
금곡천 외 3개소 소하천정비공사	금곡천 등	석축설치 194.4㎡ 하상정비 1,400㎡	2016.06.01~07.15	63,477,500	침수예방
드림파크로 일원 하수관로 준설공사	드림파크로	하수관 준설 61.65㎡	2016.05.03~05.30	16,038,000	침수예방
관내 하수도구조물 정비공사 연간단가(2구역)	관내일원	관로, 맨홀정비 등	2016.02.22~08.16	132,619,300	침수예방
가좌동 백범로 일원 하수암거 장비투입구 4개소 재설치공사	가좌동	암거장비투입구 2개소 재설치	2016.02.22~03.17	45,281,940	침수예방
백범로 가좌삼거리 일원외 1개소 하수관로 정비공사	백범로	하수관 재설치 570m	2016.05.16~07.05	288,273,270	침수예방
장고개로 238번길(가좌4동) 하수관로 비굴착 보수공사	장고개로	하수관 보수 L=128m	2016.04.15~05.29	120,497,000	침수예방
서구경명대로411일원외 1개소 하수관로정비공사	경명대로	하수관 정비 50m	2016.03.18~04.11	19,371,000	침수예방
방축로 하수시설물(장비투입구) 보수공사	방축로	암거장비투입구 2개소 보수	2016.06.23~07.07	19,400,000	침수예방
청마로43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청마로	하수관 재설치 62m	2016. 10. 24~11. 17	18,988,200	침수예방
경서동 서부산업단지 일원 하수관로 준설 공사	서부산업 단지	하수관 준설 250m3	2016.04.06~06.04	158,706,000	침수예방
가정로 190번길 일원 외1개소 하수관로 준설공사	가정로	하수관 준설 65.72m3	2016.05.19~06.15	18,140,000	침수예방
봉수대로 162번길 일원 하수관로 준설공사	봉수대로	하수관 준설 71.09㎡	2016.07.21~08.14	20,092,000	침수예방
원창로 89번길일원 하수관로 준설공사	원창로	하수관 준설 72㎡	2016. 10. 05~10. 29	20,320,140	침수예방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재난방지시설 예산확보	4,035	8,408	3,188	2,624	5,256



☞ 재난방지시설 예산확보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2013년도 : 드림파크로(60억) 정비에 따른 증가
- 2016년도 : 청라 준공에 따른 관리예산 보조 지원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장비·인력의 지정

가.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방재물자]

구분	오일 웬스	유출 착제	흡착물	유처 리제	중화제	황산반토		소석회
	(km)	(천매)	(km)	(㎏)	(㎏)	고체(톤)	액체(㎏)	(ton)
계	0.3	1.3	0.1	0.8	0.4	0.2	0	0.2

[의료시설]

구분	개소	의사	간호사	구급차	병상수	영안실
합계	502	540	578	15	9,250	3
병원	428	461	551	13	9,244	3
보건소	2	6	22	2	0	0
기타	72	73	5	0	6	0

[수용시설]

총계		학 교		경로당		기 타	
개소	수용 인원	개소	수용 인원	개소	수용 인원	개소	수용 인원
83	13,737	56	11,637	26	1,327	1	773

나. 장비 및 인력의 지정

[장비지정]

◆ 구조장비

총계	사다 리차	구조 공작차	배연차	매몰자 탐지기	구조용 로프	구명 보트	구명환	구명 동의	산 소 호흡기	잠수 세트	유압잭	에어백	타
56	3	1	1	0	8	3	7	11	0	19	2	1	0

◆ 복구장비

구분	계	크레인	굴삭기	불도저	덤프	로우더	견인차	청소차	기타
계	40	0	2	0	6	0	0	14	18
행 정	39	0	1	0	6	0	0	14	18
민 간	1	0	1	0	0	0	0	0	0

◆ 산불진화장비

구분	계	산불진화차	동력펌프	등짐펌프	동력톱	휴대용무전기	무선기지국	차량이동국	쌍안경	휴대폰	밤비바켓	짚차	화물차	간이수조(개)	진화도구(점)	진화안전장비(세트)	기타(점)
계	1,892	3	5	417	7	0	0	1	0	0	0	0	0	0	1,435	24	0
행정	1,892	3	5	417	7	0	0	1	0	0	0	0	0	0	1,435	24	0

◆ 기타장비

구분	계	용접기	컴프레샤	양수기	발전기	천공기	착암기	절단기	화확차	전기복구차량	기타
계	447	1	1	322	0	1	0	2	3	1	116
행정	331	0	0	320	0	0	0	0	0	1	10
유관기관	116	1	1	2	0	1	0	2	3	0	106

[인력지정]

◆ 기술인력

구분	계	토목	건축	환경	전기	가스	통신	화공	원자력	식재료	유압	기타
총계	30	8	10	0	1	1	4	0	0	0	1	5

◆ 기능인력

구분	계	전기공	기계공	통신공	잡종공	용접공	중기운전	중기정비	배관공	기타
총계	56	10	2	10	0	7	2	1	2	22

◆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구분	계	특수단체 및 개인					봉사단체 및 개인					
		의용소방대	산악구조대	수중구조대	아마추어무선봉사대	기타	적십자봉사대	새마을부녀회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	여성단체협의회	기타
단체	8	1	0	1	0	1	1	1	1	1	1	0
인원	2,857	242	0	9	0	380	112	335	500	170	1,109	0

(9)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가.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

- 해당사항없음

나.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시설물별	내진설계 대상(①) (동수, 시설물 수)	내진설계 적용 +내진성능확보+ 내진 보강 실적(②) (전년도 까지)	2015년 내진보강 실적		내진율(%) (②+③)/① ×100
			동수(시설수) (③)	투자사업비 (백만원)	
건축물	18	2	-	-	11%

※ 내진설계 적용 : 관련 법령이 제정된 후 설치되어 내진설계가 적정하게 반영된 건축물(시설물)

※ 내진성능 확보 : 기존시설물로 내진성능평가* 결과 현재의 내진설계 기준에 적합하게 평가되는 건축물(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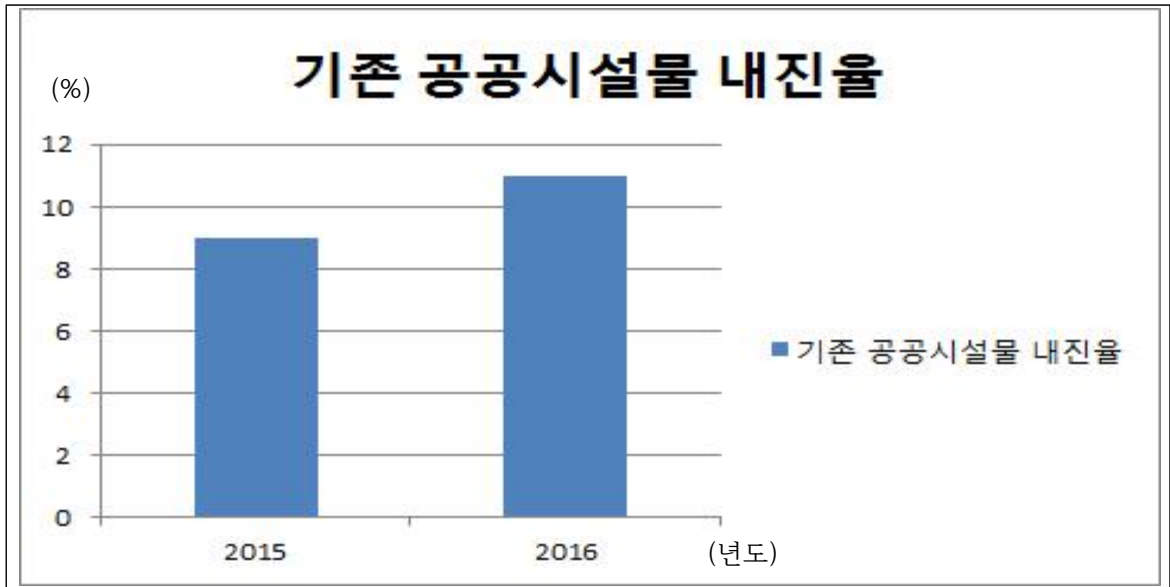
*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함

※ 내진보강 : 건축물(시설물) 건축시 내진보강이 적용되지 않아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한 결과 내진보강이 필요하여 내진보강을 완료한 시설물

※ 투자사업비 : 내진보강에 따른 설계비 및 공사비 등을 합산한 금액임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내진율	-	-	-	9	11



☞ 내진실적 및 내진율 등이 저조한 사유 구체적 내용설명

- 2015년도까지는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공사 예산 미반영 등 내진보강 추진실적 및 내진율이 저조함.

- 2016년도 서구청사, 가좌노인문화센터를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내진보강을 추진 예정임.

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종합상황실 내진대책 추진

구 분	구조체 내진 보강 여부	지대본·상황실		비고
		바닥 이중마루 보강 여부	전력과 통신 등 관련설비 면진테이블 설치 여부	
지역대책본부	-	-	○(2014.9.16.준공)	
종합상황실	-	-	○(2014.9.16.준공)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내진대책 등이 저조한 사유 구체적 내용설명

- 구조체 내진 보강은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이 서구청 본청4층에 위치함에 따라 내진 보강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 사항임.

라.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지정 및 관리

지구별	긴급대피장소 (개소)	표지판(개)				경보 시스템 (개소)
		계	안내표지 판	대피장소 표지판	대피로 표지판	
	해	당	없	음		

◇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지정 및 관리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정비 사업비 집행실적 (천원)	해	당	없	음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
기금의 적립 현황

[재난관리기금 적립]

법정적립기준	당해연도 확보기준액(①)	확보액(②)	확보율 (①/②×100)
1,332백만원	1,332백만원	1,332백만원	100%

※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기준

-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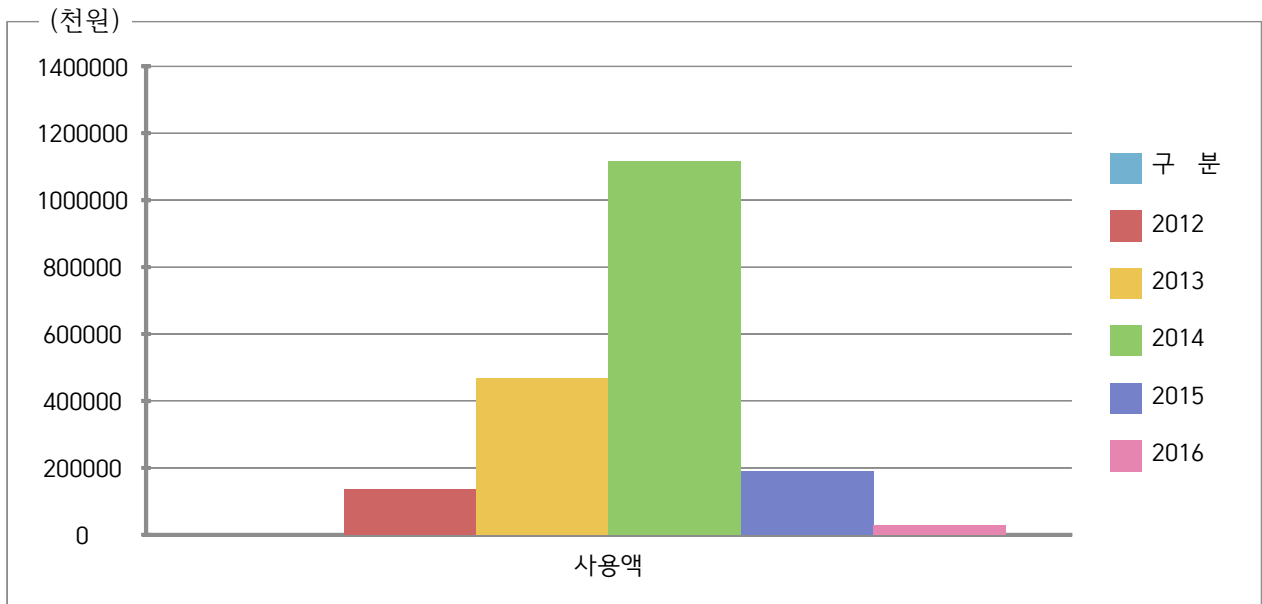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자연재난) 또는 나목(인적재난)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 ✓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 ✓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 ✓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 ✓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 ✓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 ✓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단위 : 천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사용액		135,323	468,304	1,117,236	189,750	29,031
사 용 액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59,582	388,501	957,768	159,417	29,031
	재해저감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45,646	58,982	157,949	0	0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	30,095	20,821	1,519	2,833	0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0	0	0	0	0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0	0	0	0	0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0	0	0	0	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0	0	0	0	0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0	0	0	27,500	0



☞ 재난관리기금 확보 및 사용액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예측가능한 사업비는 일반예산으로 확보하여 집행하였기에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액이 감소하였음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운용 현황

[시군구 행동매뉴얼 작성·운용 등 총괄 현황]

행동매뉴얼 명	소관 국 또는 과	작성년도	매뉴얼 주요내용
풍수해 대응 행동매뉴얼	안전총괄실	2014	유형별, 상황별, 부서별 세부시행 매뉴얼
지진 대응 행동매뉴얼	안전총괄실	2014	유형별, 상황별, 부서별 세부시행 매뉴얼
화산폭발 대응 행동매뉴얼	안전총괄실	2014	유형별, 상황별, 부서별 세부시행 매뉴얼
적조 대응 행동매뉴얼	경제에너지과	2015	유형별, 상황별, 부서별 세부시행 매뉴얼
산불 대응 행동매뉴얼	공원녹지과	2015	유형별, 상황별, 부서별 세부시행 매뉴얼
유해화학물질 누출 대응 행동매뉴얼	환경보전과	2014	유형별, 상황별, 부서별 세부시행 매뉴얼
대규모 수질오염 대응 행동매뉴얼	환경보전과	2015	유형별, 상황별, 부서별 세부시행 매뉴얼
대규모 해양오염 대응 행동매뉴얼	환경보전과	2015	유형별, 상황별, 부서별 세부시행 매뉴얼
댐 붕괴 대응 행동매뉴얼	안전총괄실	2014	유형별, 상황별, 부서별 세부시행 매뉴얼
가축질병 대응 행동매뉴얼	경제에너지과	2015	유형별, 상황별, 부서별 세부시행 매뉴얼
감염병 대응 행동매뉴얼	보건행정과	2015	유형별, 상황별, 부서별 세부시행 매뉴얼
보건의료 대응 행동매뉴얼	보건행정과	2015	유형별, 상황별, 부서별 세부시행 매뉴얼
사업장 대규모인적사고 대응 행동매뉴얼	안전총괄실	2015	유형별, 상황별, 부서별 세부시행 매뉴얼

[시군구 행동매뉴얼 개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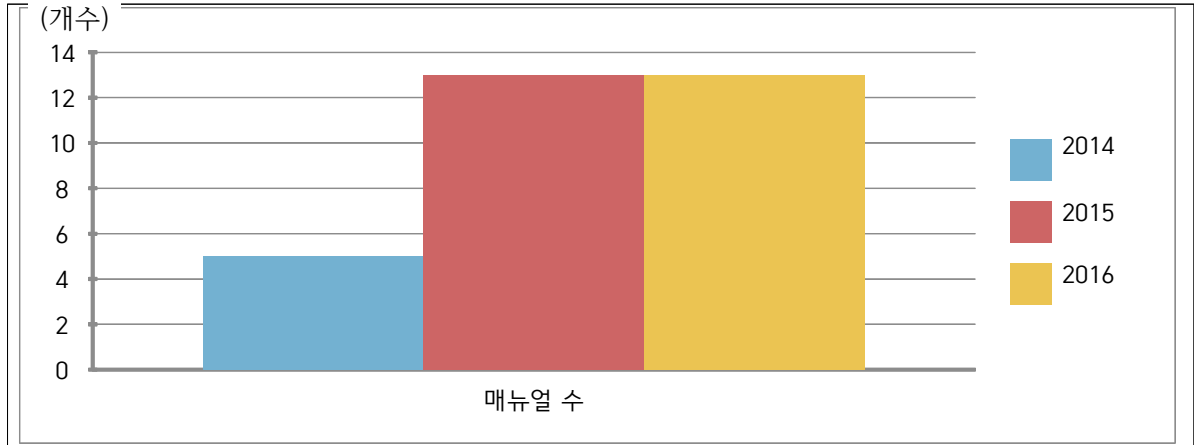
행동매뉴얼 명	개정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고
풍수해 대응 행동매뉴얼	2016.03.	위기관리 매뉴얼 변동에 따른 주요 실무반 현행화 및 재난대응 수칙 간소화 등	
지진 대응 행동매뉴얼	2016.11.	위기관리 매뉴얼 변동에 따른 주요 실무반 현행화 및 재난대응 수칙 간소화 등	
화산폭발 대응 행동매뉴얼	2016.03.	위기관리 매뉴얼 변동에 따른 주요 실무반 현행화 및 재난대응 수칙 간소화 등	
적조 대응 행동매뉴얼	2016.03.	위기관리 매뉴얼 변동에 따른 주요 실무반 현행화 및 재난대응 수칙 간소화 등	
산불 대응 행동매뉴얼	2016.11.	위기관리 매뉴얼 변동에 따른 주요 실무반 현행화 및 재난대응 수칙 간소화 등	
유해화학물질 누출 대응 행동매뉴얼	2016.11.	위기관리 매뉴얼 변동에 따른 주요 실무반 현행화 및 재난대응 수칙 간소화 등	
대규모 수질오염 대응 행동매뉴얼	2016.11.	위기관리 매뉴얼 변동에 따른 주요 실무반 현행화 및 재난대응 수칙 간소화 등	
대규모 해양오염 대응 행동매뉴얼	2016.11.	위기관리 매뉴얼 변동에 따른 주요 실무반 현행화 및 재난대응 수칙 간소화 등	
댐 붕괴 대응 행동매뉴얼	2016.03.	위기관리 매뉴얼 변동에 따른 주요 실무반 현행화 및 재난대응 수칙 간소화 등	
가축질병 대응 행동매뉴얼	2016.03.	위기관리 매뉴얼 변동에 따른 주요 실무반 현행화 및 재난대응 수칙 간소화 등	
감염병 대응 행동매뉴얼	2016.03.	위기관리 매뉴얼 변동에 따른 주요 실무반 현행화 및 재난대응 수칙 간소화 등	
보건의료 대응 행동매뉴얼	2016.03.	위기관리 매뉴얼 변동에 따른 주요 실무반 현행화 및 재난대응 수칙 간소화 등	
사업장 대규모인적사고 대응 행동매뉴얼	2016.11.	위기관리 매뉴얼 변동에 따른 주요 실무반 현행화 및 재난대응 수칙 간소화 등	

[시군구 행동매뉴얼 숙달 훈련 실시 현황]

행동매뉴얼 명	훈련일시	주요 훈련내용	훈련결과 개선내용	비고
유해화학물질 유출 대응 행동매뉴얼	2016.05.17	유해화학물질 유출 대응 토론훈련	개인별 임무카드 보완 (주민소산계획추가)	

◆ 년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4	2015	2016
매뉴얼 수	5	13	13



☞ 행동매뉴얼 수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 설명

- 2015년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등이 추가됨으로써 전체 현황이 증가됨.

⑤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진단분야별 점수]

구 분	위험환경	위험관리능력	방재성능	등 급(그룹)
진단결과	0.314	0.680	0.453	8 (라)

* (안전) 1등급/그룹 '가' <-----> 10등급/그룹 '마' (위험)

※ 지역안전도 진단

- 통계자료에 대한 전산분석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진단반의 현지진단을 통해 자연재해위험에 대한 지역의 안전한 정도를 진단

※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지역안전도 진단)

※ 지역안전도 진단목적

- 시·군·구별 피해발생빈도, 피해규모 및 피해저감능력 등의 분석을 통해 지역의 재해취약요소를 도출하고 개선함으로써
- 방재정책 전반에 대한 환류체계 구축 및 지자체 자율방재역량 제고를 위해 지역안전도 진단 실시

※ 분야별 진단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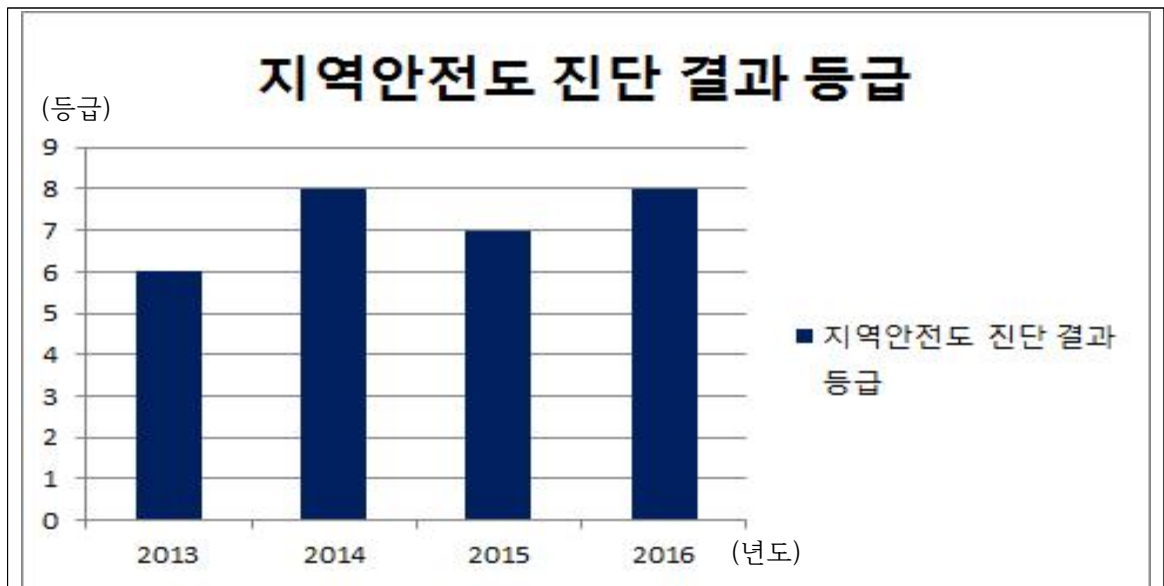
- 위험환경 : 잠재적 재해발생 가능성 및 환경적 위험도 진단
- 위험관리능력 : 재해저감을 위한 행정적인 노력도 진단
- 방재성능 : 지역의 구조적인 재해대응능력 진단

◇ 년도별 등급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3	2014	2015	2016	비고
등 급	6등급	8등급	7등급	8등급	

☞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등급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 2016년 현지진단을 미 실시하고 재해연보·기상자료 등 통계 자료를 분석 위험환경 지수만 진단하여 반영한 결과 1등급 하락됨.
- 2017년 지역안전도 현지진단 실시예정으로 등급을 상향에 기여토록 하겠음.



⑥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공시 관련 문의사항 및 의견 제출은 서구 안전총괄실(담당자 최용성, 전화 : 032)560-4702)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